

## 축산컨설턴트 자격증 시대 ‘활짝’

컨설팅협, 엄격한 자격검증 거쳐 39명 인증  
전문 컨설턴트 국한...농가 신뢰도 향상 기대

축산컨설턴트도 자격증 시대가 열렸다. 한국축산컨설팅협회(회장 정현규)는 최근 충북 음성 소재 반석LTC에서 정기총회를 겸한 축산컨설턴트 자격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반석LTC 등 2개 단체를 포함, 39명의 컨설턴트가 이번에 인증서를 받았다.

농협중앙회에서 컨설턴트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앙회와 일선 축협 직원만으로 그 대상을 국한하고 있는 만큼 전문 축산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인증제는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축산컨설팅협회측은 민간단체의 자격증이긴 하나 정부 인가 사단법인체로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컨설턴트에게만 인증서를 부여, 충분한 자격검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배합사료업체나 동물약품 업체 소속은 제외, 컨설턴트로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컨설팅협회로부터 자격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축산분야 컨설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으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 및 수의사는 7년, 학사학위 소지자는 10년, 전문대학위 소지자는 12년, 고등학교 졸업자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컨설팅협회가 실시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자격심사위원회로부터 컨설팅 실

적과 경력을 인정받아야 비로서 확정된다.

이에 따라 자질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컨설턴트에 의한 피해 방지는 물론 컨설팅 품질 제고를 통한 농가 신뢰도 기대할수 있게 됐다.

축산신문 이일호기자 2012.02.29

## 한·중FTA, 오리산업 직격탄...

생산액 최대 637억 감소

중국 사육수수 우리나라 53배·

오리고기 생산량은 23배, 농가수

1200배 달해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오리산업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오리산업이 국내보다 규모 면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국내 오리산업 생산액이 최대 637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오리협회가 애그리비즈니스경영연구소에 의뢰해 최근 발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10년 뒤에도 △현재의 동식물 검역규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도하개발 아젠다(DDA)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며 △한·미 FTA가 발효되고 △전체 농산물 중 12%는 개방이 제외된 채,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 관세를 철폐한다고 가정할 때 한·중 FTA에 따른 농업생산액 감소폭은 최소 4928억에서 최대 2조 35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한국 농업 생산액에서 오리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 3.13%를 적용하면, 오리 생산액은 최소 136억에서 최대 637억까지 감

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타 축종에 비해 일찍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이뤄진 오리산업의 경우 한·중 FTA로 인해 관세가 전면 철폐될 경우 국내 오리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오리 상시 사육수수는 국내보다 53배, 오리고기 생산량은 23배, 오리 사육 농가수는 무려 1200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오리고기가 대량 수입될 경우 현재 80% 가량을 차지하는 국내 소규모 농가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정주 연구책임자(건국대 교수)는 “중국의 위협은 가히 살인적”이라며 “농가의 생산액을 보전하는 대책 없이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오리산업은 초토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중 FTA 체결 후 5년 동안 생산자 잉여는 최소 590억원에서 최대 853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 잉여는 최소 412억에서 최대 590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12.03.01

## AI 방역조치 위반 농가·업체 40곳 적발

농림수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조치를 위반한 40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3월 5일 밝혔다. 검역검사본부, 방역본부 합동 중앙기동점검반

이 지난달 6일부터 3주간 가금류 사육 농가와 사료·분뇨처리 업체 등 499곳을 점검한 결과 농가 33곳, 농·축협 2곳, 분뇨처리업체 5곳이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남방철새 도래 시기인 3~5월 AI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기동점검반을 4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점검 실적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작년 10월부터 4개월간 지자체 주관으로 이뤄진 점검에서는 약 5만 곳 중 42곳이 적발돼 적발률이 0.08%에 그쳤다.

연합뉴스 최현석기자 2012.03.05

## 농식품부, 대만산 닭-오리 등 가금류 수입금지

대만산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월 3일 대만 행정원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발표와 관련해 대만으로부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앵무새 등)와 가금육(닭고기, 오리고기 등) 등 축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고 3월 7일 밝혔다.

이번 수입금지조치 대상은 HPAI 잠복기 및 안전기간을 고려해 대만내 최초 발생보고일(2011년 12월27일)로부터 21일을 역산한 12월7일 이후 생산·수입된 가금과 이들 가공품 등이 해당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구제역, HPAI 발생국을 여행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여행객 등에 대해 실시해 오던 국경검역 조치에 대만을 HPAI 발생국가로 분류해 국경검역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HPAI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

하기 위해 가금 사육농가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가급적 대만내 발생지역 여행과 가금 사육농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발생한 HPAI 바이러스(H5N2형)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며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에서도 장화현 및 타이난시 소재 닭농장에서 발생한 HPAI 바이러스는 H5N2형으로 인체감염 우려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진영기자 2012.03.07

## 고깃집, 연말부터 100g당 가격 표시

### 1인분 중량 제각각 혼란

이르면 올 연말부터 고기를 파는 음식점은 메뉴판에 100g을 기준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음식 가격에 부가가치세나 봉사료가 붙을 경우 이를 포함한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음식점에서 고기 가격을 매길 때 중량당 가격을 표시하도록 돼 있지만, 판매하는 곳마다 '1인분'단위로 매기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중량이 서로 달라 업소 간 가격 비교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소비자들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0g 단위로 가격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식당에서 일반적으로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점을 감안, 1인분 중량과 가격, 100g당 가격을 동시에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음식점

과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이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나 봉사료가 붙을 경우 이를 포함해 실제 지불하는 최종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식품접객업소에서 음식을 살 때 메뉴판에 표시된 가격이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과 다른 것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조선일보 박진영기자 2012.03.14

## 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실효성 논란 정부, 거점도축장 이용 '계약서 첨부' 조건 달아

HACCP 지정 등 시설 개보수 계획사업 차질 난항  
전문가 “거점도축장 5개 불과...지원 제한 불합리”

축산물 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가 정부로부터 운영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거점도축장 이용계약서'를 함께 제출토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운영자금을 지원받아 시설 개보수할 계획이었던 업체들 중 거점도축장과 거래가 없던 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거점도축장은 현재 경기, 충북, 전북, 경남지역에만 지정돼 있다. 인근에 거점도축장이 없는 가공업체 입장에서는 이용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자금 지원에 걸림돌만 생긴 셈이다.

정부는 축산물 가공업체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개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의 금리로 70%에 대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거점도축장 이용계약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가공업체들은 해당지역에 거점도축장이 없을 경우 정부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불필요한 유통비용 지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가령 거점도축장이 없는 경기 북부지역에서 경기 남부지역에 있는 거점도축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배의 운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지역 도축장에서 돼지를 받을 경우 한 마리당 2천원이 들던 수송비가 거점도축장을 이용할 경우 4천원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거점도축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비용부담 때문에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가공업체들은 그동안 수송거리가 길어질 경우 가축들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감량이나 육질저하 등을 이유로 관내 도축장 이용을 권장해온 정부의 사업지침이 올해 달라져 당혹스럽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구조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도축장을 이용하지 않는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지침에서 ‘거점도축장과 이용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올해 자금지원을 신청한 업체는 5개소에 불과하다. 정부의 전체 지원 금액은 지난해와 그대로인데 지원신청업체

만 지난해 14개소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유통 전문가들은 “거점도축장은 현재 5곳밖에 선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 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거점도축장 이용계약서가 제출돼야 한다는 단서가 붙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지원방침이 바뀌면서 HACCP 지정을 위해 계획했던 증축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축산신문 김은희기자 201.03.14

## ▶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면세유 혜택

농업용 굴삭기·사료배합기도 대상기종 포함  
농식품부, 로더 지원범위 4톤미만으로 확대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 굴삭기, 사료배합기 등도 지난 3월 15일부터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포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 보완대책 일환으로 이 같이 공급대상 기종을 확대하고 로더의 지원범위도 현행 자체중량 2톤 미만에서 4톤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급기종 확대에 따라 농업인들은 연간 981억원의 추가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업인들이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한다.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경형 또는 소형 화물자동차

로 밴(VAN)형 자동차와 지붕구조 덮개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차량은 제외된다.

또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량은 농촌진흥청의 농작업 현황 조사 결과를 반영해 연간 379ℓ를 정량 공급하며 농업용로더는 기종과 규격을 기준으로 연간 1200~1500ℓ를 공급할 계획이다.

농업용 굴삭기와 사료배합기는 농촌진흥청의 농기계 이용실태 조사에 따른 공급조건표에 의해 면세유를 배정하게 되며 해당 평균 배정량은 굴삭기는 181ℓ, 사료배합기는 1000ℓ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농업용 로더에 공급되는 면세유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연간 공급량을 제한하는 등 관리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면세유 공급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신고한 경우로 한정하며 농업인이 해당기종의 면세유 신청시 지역농협은 공급대상 기종을 확인하고 기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신고증(스티커)을 발부하며 농업인은 이 신고증을 차량에 항상 부착, 운행해야 한다.

해당기종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에서 별도로 전산 관리하고 면세유 배정시기도 월별로 정량 배정하며 월간 미리사용은 금지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에 대해서는 보유현황을 매년 신고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역농협을 통해 해당기종의 보유현황과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사용한 농가에 대해

서는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고 가산세 추징과 면세유 감량 등 처벌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수축산신문 최상희 기자 2012.03.19

## “가격보다 품질따져보고산다”

농식품부 · aT, 소비자 식품구매 설문...제조일자 · 맛 · 원산지 · 가격 順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식품구매시 가격보다는 제조일자, 맛, 원산지 등 품질을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20세이상 70세미만 소비자 2012명을 일대일면접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국내 소비자들은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5점만점 기준에 제조일자 확인이 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맛(4.48점), 원산지(4.35점), 가격(4.31점) 순이라고 답했다.

식품구매를 위한 장보기 횟수는 1주일에 한번이라고 응답한 설문자가 38.6%로 가장 많았으며 회당 지출액은 8만5200원으로 조사됐다.

품목별 구매비율은 신선식품이 47.3%로 가장 많았으며 가공식품은 19.1%를 차지했다.

최근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즉석가공식품과 같은

간편식은 조사대상의 40.1%가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용자의 절반이 넘는 52.3%는 가정 식사용으로 간편식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돼 간편식은 국민 식생활에 밀접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간편식을 주로 시간절약을 위해 구매하나 영양과 안전, 신선 등 품질면에서는 부족하다고 느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구자성 aT식품수출정보팀 팀장은 “식품업계에서는 품질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간과하고 이미 제조일자를 표시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조사로 소비자들의 식품구매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한다면 많은 식품 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농수축산신문 이동은 기자 2012.03.19

## 한·미 FTA 공식 발효 농업계·비농업계 전망 엇갈려 관세 즉시 철폐 품목 한 9061개·미 8628 개 달해

한·미 FTA가 지난 3월 15일 0시부터 공식 발효됐다. 지난 2006년 협상이 개시된 지 4년10개월만의 일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비롯한 10개 연구기관 및 경제전문가들은 한·미 FTA 발효로 인해 경제영

토가 확장되고 향후 10년간 GDP가 5.7% 늘어나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한·미 FTA 반대와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농업계와 정책 연대로 공조하고 있는 야당 등은 빈부 격차 심화와 농·축산업 등 취약산업 기반 붕괴 가능성을 제기하고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국회 비준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는 반드시 재협상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품목은 한국 측이 9061개(80.5%), 미국 측이 8628개(82.1%)에 이른다. 농산물 및 수산물의 경우 한국 측이 전체 협상 대상의 32.8%인 636개 품목이다.

우리 농어업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ASG) 적용과 계절관세 도입, 관세 철폐 유예 등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게 농림수산식품부의 설명이다.

우리 축산부문의 최대 민감 품목인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춰져 폐지되고 이 기간 중 소·돼지고기를 비롯한 30개 품목의 수입 물량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급증하는 경우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FTA 발효 5년 차에 연간 농어업생산액이 7026억 원, 10년 차에 1조 280억 원, 15년차에 1조 2758억 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발효 이후 연 평균 8445억

원의 소득이 감소한다는 관측이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여·야 간 합의된 13개 사항을 반영 총 54조 원 규모의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 진단된 축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10년 간 축산발전기금 2조원을 추가로 조성, 지원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추가 보완대책 마련과 추진에도 농어업인과 관련 단체들은 실질적인 추가 보완대책 마련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한·미 FTA 발효 중지와 폐기를 주장하는 한편 농어업인들의 생존권 확보 차원의 특단대책 강구를 촉구하고 있다.

축산경제신문 이준영기자 2012.03.15

2012년 식육중미생물검사는 총 20,271건(소 3,255건, 돼지 5,006건, 닭 10,166건, 오리 1,844건)을 실시할 계획으로 매주 축산물작업장에 출장하여 시료 채취 후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살모넬라균를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오리고기에 대하여는 도축 및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물량을 전년대비 34% 증가된 478건을 검사할 계획이다. 한편 2011년 식육중미생물검사의 경우 총 11건의 부적합이 발생하여 해당 작업장 및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실시개선 명령과 자체위생관리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기온 상승으로 인하여 축산물의 변질 가능성이 증가하는 하절기에는 미생물 검사항목을 10항목에서 15항목으로 확대하는 등 사전예방체계를 강화하고 검사결과를 영업자에게 통보 작업장에 맞는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운영토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번 검사를 통하여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라이브뉴스 도나희기자 2012.03.09

## 전북, 도내 축산물작업장 식육중미생물검사 강화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올해 도내 소재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및 식육판매장에서 유통중인 식육에 대해서 식육중미생물 검사 항목 및 물량을 확대하여 도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본격 시행 20일부터 산란계농장 첫 도입 · · · 사육 · 운송 · 도축 전과정 체계관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는 농장동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금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된 인증제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라 우리 검역검사본부 고시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은 금년에 최초로 산란계 농장에 도입 시행하는 것으로, 산란계농장에서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는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동물의 입식·출하현황, 청소 및 소독내용, 질병예방프로그램, 약품·백신구입 및 사용 등의 기록내용을 2년이상 기록·보관해야 한다.
- ② 농장내 사육시설은 계사형태의 경우 폐쇄형 케이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산란장소는 산란상이 7마리당 1개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사육밀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닭은 편안하게 일어서고, 돌아서고, 날개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바닥면적이 성계는 1㎡당 9수 이하여야 한다.
- ④ 사육환경에 대한 기준은 매일 최소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와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가 이루어지고, 조명도는 내부 조명은 균일하고 10 lux 이상이어야 한다.
- ⑤ 사육장에 별도의 방목장을 확보하여 방목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목장 면적이 1마리당 1.1㎡ 이상이어야 하고, 계사와 방목장 간 출입구는 높이 35cm이상 너비 40cm이상으로 하는 출입구가 적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절차로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가 ① 검역검사본부에 인증심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② 신청서를 접수한 검역검사

본부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심사를 마친 후 ③ 현장심사 세부일정을 신청자에게 알리고 현장심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종 인증심사 및 인증과 관련 절차는 ①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원이 인증 신청농장을 방문하여 “인증 평가기준”에 따라 농장평가를 실시하며, 이들이 실시한 ② 농장평가 결과보고서와 관련자료를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최종 심사를 받게되며, ③ 그 결과 적합한 경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명의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아울러, 인증받은 농장 및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기준에 따라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물복지 축산 인증농장 및 동물복지 축산식품 취급 판매장에는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도 실시하게 된다.

검역검사본부는 축산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시설자금 및 ‘(가칭)동물복지 축산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금년도 산란계농장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돼지, 2014년에는 육계, 2015년에는 한우와 젓소 사육농장 등으로 축종을 확대해 나가고, 사육에서부터 운송·도축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적인 농장동물 복지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역검사본부는 이번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행으로 국내 취약한 농장동물복지 수준을 높여 농장내 질병발생 예방 및 고품질·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여 축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이다.

라이브뉴스 도나희기자 2012.03.20

## 농식품부, 사육제한구역 범위 축산법 명시 착수

### 5개 축산단체와 공동 적정기준 제시 위한 연구용역 발주

허가제 도입 후속조치...지자체 무차별 규제 제동 걸릴 듯

농림수산식품부가 가축사육제한 구역 범위를 축산법으로 규정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지방조례 제·개정을 통한 일선 지자체의 가축사육 규제 추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축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등 5개 축산단체와 공동으로 '가축 사육시설 제한 범위 및 조건에 관한 연구'를 실시키로 하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두환 교수를 책임자로 하는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5개 축종자조금 사업으로 추진되며 서울대학교 이인복 교수와 국립축산과학원 최동윤 연구관, 광정훈 연구관, 송준익 연구사가 연구원으로 참여한다.

6월말까지 3개월의 조사·연구기간을 거쳐 하천 및 주민 공공시설 주변에 대한 기본적인 축사제한 범위에서부터 일반적인 축종별 적정 축사설치 범위, 농장여건 및 주변조건, 그리고 악취저감 시설과 저감조치에 따른 예외 및 완화조건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지방조례를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선 지자체의 가축사육규제 추세가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환경부 권고안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일선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구역 확대에 따라 많은 양축농가들이 축산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축산업 규제는 어디까지나 축산법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환경부의 일방통행식 대처에 불쾌감을 표출해 온 농식품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축산법 허가제 도입에 따른 축산법 하위법령(시행령)에 적용할 위치기준, 즉 가축사육제한 구역 설정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조례를 통해 하나의 산업을 규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을 가능케 한 법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축산업과 환경, 국민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한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축산법 시행령을 통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제시될 경우 그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그 기준에 따라서는 하위법으로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민가에서 최고 1km까지 설정하고 있는 지방조례의 손질이 불가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온 환경부 권고안 역시 축산법 시행령이 발효될 경우 의미를 상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일각에서는 입법을 위한 타부처 및 관계기관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함께 기존법률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일선 지자체와 환경당국의 압박속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지 향후 추이에 모든 축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이일호기자 2012.03.21

## ‘저탄소 농축산물’ 시대 열린다

### 농식품부, 온실가스 배출저감 농축산물 ‘인증’

#### 내년까지 시범사업 추진... '14년부터 본격화

올 하반기부터 ‘저탄소 농산물’을 마트에서 만나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물식품부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및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란 일반 농축산물에 비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에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관행농업으로 쌀 1kg을 생산할 때 평균적으로 논에서 약 1.49kg의 CO<sub>2</sub>가 배출된다면, 저탄소 쌀은 간단관개(물걸러대기) 실시, 비료·농약 등 외부 투입재 감축 등 검증된 저탄소 농법을 활용하여 쌀을 생산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행농법보다 줄인 것이다.

일반제품 생산시 배출되는 탄소량을 표시하는 ‘탄소표시제’는 이미 영국(2007년), 일본(2010년)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도(2009년 환경부 주관 일반 공산품 등) 추진중에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탄소 감축 프로그램인 ‘저탄소 인증’을 1차 농축수산물에 도입한 것은 세계 최초이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12년부터 13년까지

2년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14년부터 이 사업 인증을 실시할 계획으로, 앞으로 축산물, 수산물 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김영란기자 2012.03.21

## 축산물 품질 높이고 농가경영 안정 올인 농식품부, 한미FTA 대응...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총력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농림수산물부가 축산물의 품질·가격 경쟁력 제고 및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발벗고 나섰다.

농림수산물부는 가축질병근절과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등 생산성 향상과 사료비 등 생산비 절감 뿐만 아니라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데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특히 한미 FTA 연도별 관세 감축을 만큼 생산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육우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직화·규모화를 도모하고,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 확대와 한우 품종개량을 강화하는 한편 비용절감을 위해 자가배합사료기(TMR)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낙농분야에 대해서는 자동착유시설(로봇착유기)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젖소 개량으로 산유량 등 생산성 향상을 이뤄나간다는 계획이다.

돼지는 돼지열병 청정화 및 맞춤형 질병 컨설팅 지원과 종돈장 전문화·청정화 등을 통한 우수 종

돈을 공급토록 하고, 해양투기 금지 정착 및 자원 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가금류분야는 질병근절과 사양관리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출품목 다양화와 병아리 이력관리 등 위생수준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축산신문 김영란기자 2012.03.21

## 오리업계 “군 급식물량 확대해달라” “타 축종 지속확대 불구 오리고기만 제자리걸음”

가격안정·산업발전 기여...일석이조 효과 기대

오리업계가 오리고기 소비 확대를 위해 군 급식물량을 확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오리업계는 타 축종의 경우 수급에 따라 군납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고 있지만 오리고기는 몇 년째 동결돼 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오리고기의 안정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군 장병들에게 오리고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회 진출 후에도 오리고기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리고기는 지난 2009년 정식으로 군납 품목에 포함된 이후 월 150g이 공급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오리고기 군납 물량이 월 1회에서 연간 9회로 줄어들어 현재 군인 1인당 1일 3.7g이 공급되고 있다.

오리업계 관계자는“최근 몇 년 사이 오리고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젊은 층의 수요는 한계가 있다”며 “군인들에게 더 많은 오리고기를 공급해 잠재 수요를 개발해 오리고기의 소비 기반을 확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리고기 군 급식 물량 확대는 오리 산업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리업계는 지난해 공급과잉으로 인해 가격이 폭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비 확대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때문에 오리고기의 군 급식 물량 확대는 오리 가격안정과 잠재 고객의 개발을 통해 오리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오리업계의 주장이다.

축산신문 이희영기자 2012.03.27

## 농식품부, 축산차량등록제 시행

축산차량등록제가 오는 8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등록이 의무화되고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원인으로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난 달 22일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을 골자로 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공포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차량 500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특히 축산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등록대상 차량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이며,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주기적인 방문차량과 개인농장 보유차량 등을 구분해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통해 오는 8월 21일부터 차량출입정보 제공 기능 등을 갖춘 GPS를 공급하고 통신이용요금도 지급기로 했다.

손경자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사무관은 “올 상반기까지 하위법령 정비와 교육을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는 GPS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등록대상자들은 반드시 차량 등록과 GPS를 장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같은 정부 시책에 해당 관계자들은 등록대상이나 차량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주기적 방문차량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며 세밀한 시행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12. 03. 26